

압류동산의 점검신청

사 건 20○○본○○○호 채 권 자 ○○○ 채 무 자 ◇◇◇

위 당사자 사이의 귀 사무소 20○○본○○○호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압류된 목적물의 부족여부, 파손여부 등 압류물의 보관상황에 관하여 채 무자 겸 보관자의 보관장소에 가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집행관 귀중

야시 대한법률구조공단

관련법규	민사집행규칙 제137조(보관압류물의 점검) ①집행관은 채무지 💆
	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지
	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
	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	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
	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
	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,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
	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
	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